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956호 2017. 2.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064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2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 7
○ 삼척시 고시 제1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3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7
○ 삼척시 공고 제140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규칙,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8
○ 삼척시 공고 제141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입법예고 ---------- 40
○ 삼척시 공고 제142호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2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3호 해안변 소규모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일부사용 제한조치 공고 ---------- 58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19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01. 01.)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김 양 호

2017년 2월 17일

삼척시 조례 제1064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및 영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 하여"를 "초과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달하는"을 "못 미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운영에 철저를"을 "관리·운영을 철저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로, "경우를 제외하고"를 "경우 외에"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를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를 "포함되지"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초래하거나 기부인 에게"를 "주거나 기부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 근"을 "인근"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1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자 할 때"를 "하려는 경우"로, "명백히 하여야"를 "분명히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산으로서의"를 "재산으로서"로,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수탁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로, "전대(轉貸)"를 "다시 대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를 "관리수탁자는 사용·수익허"로, "전대(轉貸)하는"을 "다시 대여할"로,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를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입찰"을 "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평가 등 기 타"를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결정자료 로서"를 "결정자료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합산하여 결정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만달러"를 "100만 달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달러"를 "2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를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를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가하여 증가"를 "증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예 하거나"를 "미루거나"로 한다.

제37조 중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

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 중 "연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7조의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한다.

제40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를 "신탁할 경우"로 한다.

제42조 중 "이바지할수"를 "이바지할 수"로 한다.

제43조 중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를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를 "신중히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를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을 "신축할"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한다"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6조제8호 중 "한저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2 중 "연리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를 "누설해"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해당"을 "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67조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7 - 12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84-2번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15.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삼척시 남양길 **-**, (남양동 백조2차 맨션 ***호)
   - 성 명 : 이 * *

3. 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84-2
   - 지 목 : 임야
   - 지 적 : 750㎡
   - 승인면적 : 556㎡
   - 개간의 용도 : 개전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7. 3. 31. 까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제2017-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변경)

사업시행자	성 명	이**		생년월일	19**.**.**.
	주 소	삼척시 남양길 **-**,(남양동 백조2차 맨션 ***호)			
개간장소	시	면	리		
	삼척	근덕	궁촌		
개간의 용도	개전				
승인면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대가	-
	산84-2	임야	750㎡		
지정착수시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비예정액	금6,190,000원(금육백일십구만원)				
공사의 준공	변경 : 2017년 3월 31일까지 당초 : 2016년 12월 31일까지				
승인조건	붙임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17년 2월 15일

삼 척 시 장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 승인 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	금액	주 소	성명	
삼척	근덕	궁촌	산84-2	임야	750㎡	556㎡	-	-	-	-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승 인 조 건

1.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착수(공) 신고후 사업에 착수하시고, 착수(공) 신고서 제출시 사진(착공전)을 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후 준공계 제출시에도 사진(착공전, 공사중, 완공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개간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인가일, 인가번호, 준공예정일 및 개간인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토지 경계 및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협의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공사착수에 따른 토사유출등으로 연접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유출 방지시설, 침사지, 배수시설 등의 사전 재해방지시설 설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들은 개별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사업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우리시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내 목적사업 완료한 경우 및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구설계서를 산림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단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허가기간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를 위한 복구설계서가 산림과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사업 완료 후 관계법에 의하여 지적 및 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산림녹지과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 협의내역 및 조건

1. 협의내역

협의 번호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 예치 (천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원)	수허가자
	읍면.리	지번	지적	면적	용도	기간			
협의16-14호	근덕 궁촌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6.01.29. ~ 2016.12.31.	면제	면제	이**
변경 17-30호	근덕 궁촌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6.01.29. ~ 2017.03.31.	면제	면제	이**

2. 이행사항

○ 산지관리법 제40조,제57조 규정에 의거 기간이내 복구설계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납부 : 금250,000원(별첨 고지서에 의함)

○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

○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비예치
- 면제 (산지관리법 제38조 : 산지전용면적 660㎡미만)

○ 산지전용면허세 :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즉시 산림녹지과에 통보, 별도 고지서 송부

3. 협의조건

- 편입된 산지는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에 저촉사항 없고, 구역경계표시 확실하며, 사업계획타당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사항 없기 아래 조건을 부하여 협의함.

o 산지전용 구역경계 표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착수로 인한 연접토지 피해를 방지하고, 편입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수목등의 고정물에 폭 10cm이상 5m이내 간격으로 표시, 고정물이 없을 경우 깃발 등으로 표시)로 명확히 하여 누구나 분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 경계 표시가 망실되거나 퇴색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o 벌채목 중 매각하지 않는 벌채목은 지역의 저소득가구, 농가, 또는 지역내 필요로 하는 곳에 땔감, 톱밥 등으로 무상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은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공종·공법 등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 착수하여야 함.(※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 제출)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6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
-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 이 경우 수직높이 5m(옹벽포함)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 최초 소단의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옹벽의 첨단부 폭은 소단폭에 합산되지 아니함.
-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대책 및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을 위하여 보호공 및 녹화공법 등 자연친화적인 복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

o 본 사업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인접 주택지, 도로)등에 토사유출,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시설(침사지, 토사유출방지책, 방진망 등) 설치

o 재해예방시설은 사전에 설치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o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o 사업구역내 포함된 유·무연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o 사업수행 중 본 산지에서 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작업인부들의 라이터, 성냥, 담뱃불, 용접불똥 등 관리 철저)

o 본 사업장에 산림관련법에 의한 공무수행 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o 사업계획부지내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등)를 받은 후 산지전용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지 아니함.

o 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기의 조건을 미이행하여 허가취소, 작업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산지 경계의 침범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을 유의하여 작업인부, 장비기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

o 금회 허가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허가 절차 이행. 끝.

삼척시 고시 제2017 - 1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2. 17.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32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2.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83-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32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12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247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고천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326-1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156 (교동)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0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46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50-3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12-24 (남양동)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법정동명칭 (사직동)활용	
6		이	하	여	백		
7							
8							
9							
10							
11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5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83-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32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12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247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고천길분기)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326-1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156 (교동)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0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46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50-3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12-24 (남양동)	20170217	건물신축	20090626	법정동명칭(사직동)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7-13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02.14. ~ 2017.02.28.(15일간)
3. 말소일자 : 2017.02.14.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영○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61-5
		조립식판넬 (1층:23.04㎡저장창고, 1층:12.96㎡ 사무실)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4.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 2017-140 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규칙」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현재 사용 중인 "임대차계약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가변동 등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별표 2"를 삭제(안 제8조제2항)

〔별표 2〕 **입 주 부 담 금**

(단위:원)

아파트명	층별	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새롬아파트	1~15층	78	34,380,000	148,800	별도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변경(안 제4조제1항)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표준임대차계약서 : "별지" 참조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1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삼척시장(건축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삼척시청 건축과

- 전화: 033-570-3469(팩스 033-570-3146)
- 주소: (25914) 삼척시 중앙로296 (교동, 삼척시청) 건축과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붙임 1.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2.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가변동 등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별표 2"를 삭제(안 제8조제2항)

[별표 2] 입 주 부 담 금

(단위:원)

아파트명	층별	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새롬아파트	1~15층	78	34,380,000	148,800	별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비용추계서(해당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대차계약) ① (생 략)	제6조(임대차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공공주택특별법」 ----------.
제7조(임대보증금) ① (생 략)	제7조(임대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공공주택특별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삭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생 략)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③ · ④ (생 략)	② · 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28.]

[종전 제49조는 제52조의2로 이동 <2015.8.2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2.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사용 중인 "임대차계약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변경(안 제4조제1항)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표준임대차계약서 : "별지"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비용추계서(해당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① ---------- ------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33호, 2016.12.2., 일부개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28.]

부칙 <제14333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73호, 2016.11.25., 일부개정]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부칙 <제379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재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공공건설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 장기전세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의무기간 5년[ ] 기타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 금	원정은 . .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6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을"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 )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갑"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4조(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2.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1조의2)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비용추계서(해당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3월 5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3월 5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 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141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되었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와 중복되어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자격(안 제16조제3항제3호~제6호)

○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자격(안 제27조제3항제3호~제6호)

○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안 제28조제6호~제9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건축과

■ 전 화 : (033) 570-3453 ■ FAX : (033) 570-3146

4. 참고사항

○ 붙임문서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1부.
- 의견 제출서 1부.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급수시설 유지 보수

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제16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제4항 본문 중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제6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로, "삼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4.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5.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제2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제27조제4항 본문 중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제6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대료의 증액

8. 임대주택의 관리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삼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
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

이하 같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경로당의 유지보수	<삭 제>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6.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급수시설 유지 보수
7. 공동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삭 제>
8. ~ 10. (생 략)	7. ~ 9.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생 략)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제15조(위원회)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	제15조(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

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② (생 략)	제1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회계·법률·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부한 사람 2명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신 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	④ ----------

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 ----------.
제17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의결한다.	제17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장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제26조(위원회)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제27조(구성) ①·② (생 략)	제2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1명	4.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5.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신 설>	6.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제6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 ----------.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의결한다.	제28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7. 임대료의 증액
<신 설>	8. 임대주택의 관리
<신 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 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 - 142호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사유

○ 읍 · 면지역과 동지역간에 소매인 지정 기준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일부 난해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서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유지 기준을 변경 (안 제3조 1호~3호)

- 읍 · 면지역과 동지역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유지 일원화 : 50미터 이상 거리유지

○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서 2개소 이상 소매인의 지정 방법을 변경(안제4조제1항)

- 층수(6층 이상)와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지정

▣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이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열린시정-- 시정홍보-입법/공고/고시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70-3351 ■ 팩스 : 033-570-3140

붙임 1.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 제3항 ----------.
1. 시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외 지역의 경우에는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3.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충족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① 건축물 또는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설물 내 기 지정소매인의 추가지정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담배판매(소비)량이 관할 시 소재 전체 소매인의 1년간 평균담배판매(소비)량의 200%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정 할 수 있으며, 기 지정소매인의 지정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부터 추가소매인 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판매량으로 계산한다.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3 호

해안변 소규모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일부사용 제한조치 공고

「하수도법」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제한) 규정에 의거 해안변 소규모 하수처리장(원평, 초곡, 용화, 장호, 갈남1리) 용량 초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공하수도 일부 제한 사항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삼 척 시 장

1. 공공하수도 일부사용 제한지역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시설연도	처리용량(m³ /일)	해당 읍.면
원평	궁촌1리, 매원2리	' 14.06. (' 15 개량)	70	근덕면
초곡	초곡1리, 초곡2리	' 14.06.	60	근덕면
용화	용화1리, 용화2리	' 05.08. (' 15 개량)	100	근덕면
장호	장호1리, 장호2리	' 06.11.	170	근덕면
갈남1리	갈남1리	' 12.04.	50	원덕읍

2. 제한대상

○ 단독주택(5인기준 또는 1톤미만) 외 모든 신축 건축물(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포함)

⇒ 본 구역 배수설비 : 개인 하수처리(오수처리) 시설 설치

3. 제한기간 : 2017. 03. 01. ~ 시설확충 시까지

4. 공고기간 : 2017. 02. 13. ~ 2017. 02. 28.(15일)

5. 해안변 소규모 하수처리장별 위치도

가. 원평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나.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다. 용화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라. 장호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마. 갈남1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